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2일
- 나. 발 의 자: 고기관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0. 12. 7.) 상정 “보류” 의결
- 마. 재상정일자: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미자 의원)

- 가. 제안이유
  -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자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19조제2항)

-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개정(안 제2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선영)

- 본 안건은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

#### ○ 주요내용은

- 안 제19조제2항에서 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2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 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고자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운영 중인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총무까지 확대하고 자문위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4.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 중 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자문위원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타 직능단체 연합회 등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19조제2항 중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및 총무로”를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로,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19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293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21. 3. 2.

제안자: 김길자 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 중 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자문위원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타 직능단체 연합회 등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정함.

## 2. 수정내용

- 안 제19조 제2항 중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및 총무로”를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로,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19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제2항 중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및 총무로”를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로,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19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9조(청소년지도협 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 ----- <u>각 동청소 년지도협의회장으 로</u>----- -----, <u>부 회장 3명</u> ----- -<u>사무국장</u>----- ----- -.</p> <p>③ (생 략) 〈<u>신 설</u>〉</p>	<p>제19조(청소년지도협 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 ----- ----<u>각 동청소년지 도협의회장 및 총무 로</u> ----- -----, <u>부회장 4명</u> -----<u>사무총 장</u>----- ----- -----.</p> <p>③ (생 략) 제19조의2(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구청소년지 도협의회에 구청소 년지도협의회 자문 위원단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구청소년지도협</p>	<p>제19조(청소년지도협 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각 동청소 년지도협의회장으 로</u>----- -----, <u>부 회장 4명</u> ----- -<u>사무국장</u>----- ----- -.</p> <p>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의회 자문위원단은 전임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p> <p><u>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피성년후견인</u></li> <li><u>2. 피한정후견인</u></li> <li><u>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u></li> <li><u>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u></li> </ol>	<p>의회 자문위원단은 전임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p> <p><u>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li> <li><u>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li> <li><u>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li> </ol>	<p>의회 자문위원단은 전임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p> <p><u>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li> <li><u>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li> <li><u>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li> </ol>

현행	개정안	수정안
	<p>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p> <p>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p>	<p>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p> <p>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다. 「<u>아동·청소년의</u> <u>성보호에 관한 법</u> <u>률</u>」 제2조제2호의 <u>아동·청소년대상</u> <u>성범죄</u></p> <p>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u>사람</u></p>	<p>다. 「<u>아동·청소년의</u> <u>성보호에 관한 법</u> <u>률</u>」 제2조제2호의 <u>아동·청소년대상</u> <u>성범죄</u></p> <p>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u>사람</u></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 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년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p> <p>-----</p> <p>-----</p> <p>-----</p> <p>-----부회장 3명</p> <p>-----</p> <p>-----</p> <p>-----</p> <p>③ (생략)</p> <p>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2. 피한정후견인</p> <p>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p> <p>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p>	<p>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부회장 4명</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p>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p>

현행	개정안
	<p>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p> <p>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p> <p>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93 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일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5명

## 1. 제안이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19조제2항)
- 나.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 다. 지도위원 결격사유 개정(안 제22조)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및 총무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은 전임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u>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u></p> <p>③ (생략)</p> <p><u>〈신설〉</u></p>	<p>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및 총무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① <u>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u>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u>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u>에 <u>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은 전임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u></p>
<p>제22조(결격사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u></p>	<p>제22조(결격사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u></p>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293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21. 3. 2.

제안자: 김길자 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 중 구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자문위원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타 직능단체 연합회 등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정함.

## 2. 수정내용

- 안 제19조 제2항 중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및 총무로”를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로,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19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제2항 중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및 총무로”를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로,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19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9조(청소년지도협 의회 설치 및 구성)</p> <p>① (생 략)</p> <p>② ----- ---- <u>각 동청소년지도협</u> <u>의회회장으로</u>---</p> <p>----- -----, <u>부회장 3명</u> -----<u>사무국장</u> ----- -----.</p> <p>③ (생 략) 〈<u>신 설</u>〉</p>	<p>제19조(청소년지도협 의회 설치 및 구성)</p> <p>① (생 략)</p> <p>② ----- ---- <u>각 동청소년지도협</u> <u>의회회장 및 총무</u> <u>로</u> ----- -----, <u>부회장 4명</u> -----<u>사무총장</u> ----- -----.</p> <p>③ (생 략)</p> <p>제19조의2(자문위원 단 설치 및 운영)</p> <p>① 구청소년지도협 의회의 효율적인 활 동을 위하여 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구청소년지도협 의회 자문위원단은 전임 동청소년지도 협의회회장으로 구성 하되, 제20조제2항</p>	<p>제19조(청소년지도협 의회 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각 동청소년지도협</u> <u>의회회장으로</u>---</p> <p>----- -----, <u>부회장 4명</u> -----<u>사무국장</u> ----- -----.</p> <p>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p> <p>2. 피한정후견인</p> <p>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p> <p>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p>	<p>에 따라 해촉된 사람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p>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p> <p>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p>	<p>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p>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p> <p>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u>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u></p> <p><u>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u></p> <p><u>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p> <p><u>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u></p>	<p><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u>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u></p> <p><u>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u></p> <p><u>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p> <p><u>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사람</u>	<u>사람</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내,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